

중고교생 대상 전공체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2017.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이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과전공 체험 프로그램과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열린교육과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충함으로써 중고등학교와의 교육적 유대를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설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은 전학부(과)에 개설된 교양 및 전공과정과 연계하여 실제 교육이 가능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3조(프로그램 운영관리) 개설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개설한 학부(과)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되, 개설프로그램별 신청 접수 및 사전준비사항, 결과보고서 수합 보고 등은 입학처에서 담당하여 운영관리한다.

제4조(프로그램 운영계획)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학과별 신청서를 제출받아 개설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제5조(프로그램 신청접수) ①고교전공체험프로그램은 매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자를 접수받아 운영한다.

②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꿈길”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접수 받거나 교육청 또는 참여학교로부터 직접 신청받아 운영한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 ①프로그램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익월로 운영을 연기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다.

②원활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입학처에서는 참여 중고교와 지속적 교류를 진행하고 필요시 참여학생들의 수료증을 제작하여 발급한다.

제7조(재정)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대학의 예산과 보조금, 용역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한다.

제8조(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